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33조 관련)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경우

구분	업무정지에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1	5만원	3억5천만원 미만
2	6만원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3	8만원	4억5천만원 이상 5억5천만원 미만
4	9만원	5억5천만원 이상 6억5천만원 미만
5	11만원	6억5천만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6	13만원	7억5천만원 이상 8억5천만원 미만
7	14만원	8억5천만원 이상 9억5천만원 미만
8	19만원	9억5천만원 이상 15억원 미만
9	31만원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0	47만원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1	61만원	3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12	78만원	45억원 이상 55억원 미만
13	94만원	55억원 이상 65억원 미만
14	111만원	65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5	128만원	75억원 이상 85억원 미만
16	139만원	85억원 이상 95억원 미만
17	194만원	95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8	317만원	15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19	478만원	25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
20	556만원	350억원 이상

비고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적용 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업무정지와 품목제조(수입)업무정지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의 경우

구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제외한 의약품 판매업자
		전년도 총매출 금액	전년도 총매출 금액
1	3만원	5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2	6만원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3천만원 이상 4천5백만원 미만
3	9만원	7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천5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4	12만원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5	15만원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6	18만원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9천만원 이상 1억5백만원 미만
7	21만원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억5백만원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8	24만원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억2천만원 이상

			1억3천5백만원 미만
9	27만원	3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1억3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0	30만원	40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1억6천5백만원 미만
11	33만원	4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억6천5백만원 이상
			1억8천만원 미만
12	36만원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1억8천만원 이상
			1억9천5백만원 미만
13	39만원	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1억9천5백만원 이상
			2억1천만원 미만
14	42만원	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억1천만원 이상
			2억2천5백만원 미만
15	45만원	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2억2천5백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16	48만원	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억4천만원 이상
			2억5천5백만원 미만
17	51만원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2억5천5백만원 이상
			2억7천만원 미만
18	54만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억7천만원 이상
			2억8천5백만원 미만
19	57만원	200억원 이상	2억8천5백만원 이상

비고

1.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은 해당 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